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9.

농림축산식품부

1. 개정이유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이용권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대상 선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전담기관의 지정 및 예산 지원,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농식품이용권 지급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99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안 제1조의2)

농식품이용권 지급신청서 및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를 등을 규정하고
첨부서류는 자료제공 등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나.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조의3)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

다. 과징금의 납부통지(안 제1조의4)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및 징수절차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이하 “농식품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영 제1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농식품이용권 수급자의 성명

2. 농식품이용권의 일련번호

3.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해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의 신청, 지급 및 이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6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능

력 등 기술적 능력에 관한 서류

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의4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주소				가구주와의 관계		
자격검증 정보	[]생계급여 []보장시설 []영양플러스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보장 가구원 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검증정보		자격검증 결과
신청 결과 통지 방법		[]서면 []문자메시지					
카드 수령 방법		[]주민등록주소지로 배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알림서비스 수신		[]수신 []미수신					
점자카드 여부		[]예 []아니오		꾸러미 신청 여부		[]예 []아니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식품이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대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2. 외국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외국인 가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3은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농식품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9조·제22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6조의5에 따라 농식품이용권 지급 및 관리를 위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 농식품이용권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농식품이용권 카드 발급 - 농식품이용권 사업 안내 및 정보제공, 사업관리 등 제도운영 - 농식품이용권 사업성과분석 및 식생활교육
수집·이용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보장가구원사항(가구주와의 관계, 성명, 전화번호), 신청서 기재사항, 이용권 카드번호, 이용권 카드 사용내역(사용처, 구입품목, 금액)
보유기간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식품이용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농식품이용권 전담기관, 농식품이용권 식생활교육기관(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 포함), 농식품이용권 사업성과분석기관, 농식품이용권 카드 발급기관
정보 제공 목적	농식품이용권 카드 발급 및 사업성과분석, 식생활교육
정보 제공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원금액, 이용권 카드 사용내역(사용처, 구입품목, 금액)
보유기간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식품이용권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안내

수집·이용목적	- 농식품이용권 지원 자격 확인 등 농식품이용권 발급·관리 업무 - 농식품이용권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이용대상 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임신부 유무
보유기간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상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이 그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받으면 주소, 보장가구원,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농식품이용권 지원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위임인 (위임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위임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위 위임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6조의5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농식품이용권 카드 발급 등 신청을 위한 대리인의 신분확인 등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보유기간	■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농식품이용권 업무처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해야만 농식품이용권 카드 발급 등 업무의 수임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후견인/법정대리인 기본증명서 등 이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주요 업무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 체계가 명시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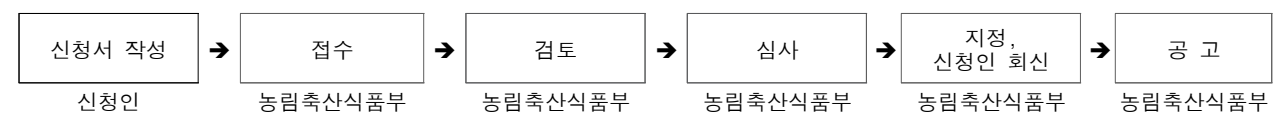
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수납인		

과징금영수필통지서

(농림축산식품부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수납인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수납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이하 “농식품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u>

1. 영 제1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

2.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
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
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
다]

3.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
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
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
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
다)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
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
우 이를 검토하여 농식품이용권
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식품
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농식품이용권 수급자의 성명

<신 설>

2. 농식품이용권의 일련번호

3.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해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의 신청, 지급 및 이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6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u><신 설></u>	<u>다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u> <u>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u> <u>에 관한 서류</u> <u>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①</u> <u>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u> <u>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u> <u>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u> <u>다.</u> <u>② 영 제16조의4제6항에 따른</u> <u>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u> <u>「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u> <u>준용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274